

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

과 목	민사소송법	수험번호		성 명	
-----	-------	------	--	-----	--

【 A-1 】 (30점)

甲은 자기 소유의 A임야에乙이 무단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,乙을 피고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(다음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.

- (1) 甲과乙은 “① 甲은 A임야에 대해서乙에게 10년 기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인정하고, 그 지상권설정과 관련하여乙은 甲에게 매월 금 300만원을 지급한다. ② 甲은 위 소를 취하한다.”는 내용의 소취하계약을 체결하였다(이 계약은 적법하다고 상정한다). 甲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논하시오. (15점)
- (2) 위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乙이 항소를 제기하였다. 항소심 계속 중 위 (1)과 같은 내용의 소취하계약을 하였고, 이에 따라 甲이 소를 취하하였다. 그런데乙이 위 약정한 금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자, 甲이乙을 피고로 재차 A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이 소가 적법한지 논하시오. (15점)

【 A-2 】 (20점)

다음 각 반소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.

- (1)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제1심 소송계속중 乙은 별개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. (10점)
- (2) X는 Y에 대하여 고의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금액으로 3,000만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제1심 소송계속중 Y는 X를 상대로 매매 대금채권 2,000만원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면서 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. (10점)

【 B-1 】 (30점)

甲과 乙은 인도를 걸어가다 갑자기 인도로 진입한 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모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. 甲이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이 소송에서는 피고 丙의 과실 여부와 손해 금액이 쟁점이 되고 있다(다음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.

- (1) 피고 丙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인도로 진입하게 된 것은 뒤에 있던 확인불명의 다른 차량이 자신의 자동차를 추돌한 사실(A사실)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. 원고 甲이 소송에서 A사실을 인정하였다면, 법원은 이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가? (10점)
- (2) 丙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, 甲이 배상금액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을 하지 않은 채, 청구기각판결을 하였다면, 이는 상고이유가 되는가? (10점)
- (3) 乙은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甲에게 보조참가할 수 있는가? (10점)

【 B-2 】 (20점)

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乙은 자신이 위 1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, 만약 빌렸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하였으며, 위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비적으로 자신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(다음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).

- (1) 제1심법원은 乙이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. 甲만이 항소하였는바, 항소심법원은 乙이 甲으로부터 대여받기는 하였지만, 乙의 변제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.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? (5점)
 - (2) 제1심법원은 심리결과 乙이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고,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으나, 乙의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.
- 가. 甲만이 항소하였는바, 항소심 법원은 乙이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.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? (8점)
- 나. 乙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가? (7점)